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October 28, 2021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는 앞으로 주요 공정거래 관련 규제 동향이나 뉴스를 정리하여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정거래 소식지 (2021년 10월 2~3주차) 요약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주요 내용
I. 보도자료	
<u>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u> 10. 12.	• (이슈)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 (주요내용) 공정위는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힘
<u>공정위원장, 제20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참석</u> 10. 14.	• (이슈) 제20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참석 • (주요내용) 공정위원장은 '제20차 ICN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디지털 시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대응방안 논의
<u>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u> 10. 14.	• (이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 (주요내용)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힘
<u>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u> 10. 15	• (이슈)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 (주요내용) 공정위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1. 5. 25. 시행)의 개정으로 위약금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

이슈	주요 내용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 19.	• (이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요내용) (i)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및 주체 정비, (ii)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절차 폐지, (iii)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고시 시행 10. 21.	• (이슈)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고시 시행 • (주요내용)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가 2021. 10. 21.부터 시행됨
공정위-한국지배구조원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10. 22.	• (이슈) 공정위-한국지배구조원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 (주요내용) 공정위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
II. 주요 소식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예정 10. 14.	• (이슈)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주요내용) 공정위는 약식절차를 1억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예정
공정위,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 구성 예정 10. 17.	• (이슈)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 구성 • (주요내용) 공정위는 사건적체 지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구성, 내부시스템 점검을 시작할 예정(상임위원 인원 확대 등 논의)
기업집단국 지난 4년간 총 28건 제재 10. 18.	• (이슈) 기업집단국 제재 현황 • (주요내용) 기업집단국은 지난 4년 동안 대기업들을 상대로 총 28건을 제재하였고, 이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총 17건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필요성 재강조 10. 20.	• (이슈)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동향 • (주요내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21. 10. 20.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주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
지난 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내부거래 총액 8.7%(약 15조원) 감소 10. 21.	• (이슈)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액 동향 • (주요내용)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총액이 약 8.7%(약 15조원)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이슈	주요 내용
III. 국회 발의법안	
<u>하도급법 일부개정안(전재수 의원안) 국회제출</u> 10. 15.	• (이슈)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전재수 의원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안병길 의원안) 국회 제출</u> 10. 21.	• (이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농해수위 안병길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하도급법 일부개정안(윤준병 의원안) 국회 제출</u> 10. 21.	• (이슈)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환노위 윤준병 의원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정부안) 국회제출</u> 10. 22.	• (이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공정거래 소식지 (2021년 10월 2-3주차)

I. 보도자료

1.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0. 12.)

- 공정위는 (i) 독립경영임원 관련자에 해당하는 친족 범위 완화, (ii) 독립경영 신청절차 보완 및 제출서류 완화, (iii) 친족독립경영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10. 12.부터 2021. 11. 1.까지 행정예고하였고,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또는 임원(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또는 임원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

[주요 개정 내용]

• 독립경영임원 관련자에 해당하는 친족 범위 완화

- (개정 배경)

- 현행 지침은 출자제한요건 등 독립경영 인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독립경영자 관련자의 범위를 독립경영 확인서를 기준으로 하면서, 임원독립경영의 경우 독립경영확인서 작성 시 독립경영자 관련자로 임원의 배우자, 혈족 6촌, 인척 4촌 전부를 기재하도록 하였음
- 이에 임원독립경영을 위해서는 기업집단 동일인과 관계가 없더라도 임원의 혈족 6촌까지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가 제한*되고, 독립경영을 하고자 하는 임원도 친족 현황 일체를 파악하고 이들의 출자를 관리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음

* 현행 시행령은 독립경영임원 관련자의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출자를 전면 금지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안은 임원 선임 이전 보유지분에 한해 상장사 3%, 비상장사 15% 미만까지 허용

- (개정 내용)

- 독립경영 확인서 등을 기재할 때 임원의 친족이면서 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에도 해당하는 자만을 기재하도록 하여 독립경영자 관련자로서 출자제한 요건을 적용받는 임원의 친족 범위를 대폭 축소함
- 다만, 편법적인 규제면탈 방지를 위해 임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친족 등의 차명을 통해 보유하는 경우 임원독립경영을 미인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독립경영 신청절차 보완 및 제출서류 완화

- (개정 배경)

- 독립경영 인정 신청시 독립경영자 및 동일인 측 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임원겸임 현황,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현행 지침은 신청서류의 보정이나 직권 제출 요청 등 절차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어 독립경영 신청인이 신청 당시 제출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면 독립경영 신청 자체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었음

- 한편, 신청서류에 있어서도 공정위 위반여부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은 필요성에 비해 기업의 자료작성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개정 내용)

- 독립경영 신청 시 당시 신청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공정위가 이후 보정을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청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절차규정을 마련하였음

*독립경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필요시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 연장 가능)

- 또한, 독립경영 신청서류에서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공정거래 위반여부 확인서를 삭제하는 한편, 독립경영임원 측 회사와의 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도 거래가 존재하는 소속회사의 내역만을 집단 대표회사가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부담을 완화

• 친족독립경영 사후관리 강화

- (개정 배경)

- 현재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친족독립경영 회사 간 부당지원을 감시하기 위해 친족독립경영을 신청했던 회사에 대해서는 독립경영 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독립경영 후 독립경영친족이 새롭게 지배력을 획득한 회사는 거래내역 제출의무가 없어 부당지원을 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 또한, 친족독립경영 회사가 제외결정 취소되거나 청산 등으로 전제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독립경영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 다시 편입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당 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상태가 지속되어 사익 편취 등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

- (개정 내용)

- 독립경영친족이 독립경영 이후 신규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자료제출 의무를 확대
- 또한, 독립경영친족의 친족 지위를 복원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도 마련하여 친족 지위 복원 시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함

**(i)공정위가 친족독립경영 회사에 대한 제외결정을 취소한 경우, (ii)친족독립경영 회사가 청산, 지분매각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독립경영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어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가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2. 공정위원장, 제20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참석 (10. 14.)

- 공정위원장은 ‘제20차 ICN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디지털 시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
- 공정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과 시정조치방안’이라는 주제의 전체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디지털 시장 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제도 개선)** 코로나 19로 인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플랫폼의 지배력 강화로 독점력 남용 우려도 존재하므로 경쟁당국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규범을 정립하고자 (i) 플랫폼과 입점업체, (ii) 플랫폼과 소비자, (iii) 플랫폼 간 경쟁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제도 개선과 법 집행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
- **(조직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의 주요 현안에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ICT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앱마켓, O2O 플랫폼, 디지털 광고 등 주요 현안별로 세부 분과를 운영하여 사건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며,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자사우대 등 사업자들의 경쟁제한행위를 예방할 것이라고 발표
- **(디지털 시장 내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한다는 점을 밝히고, 이는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실질적인 경쟁제한의 폐해를 판단하여 전통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을 유도하도록 설계하였다고 설명

3.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0. 14.)

- 공정위는 (i) 정액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 구간 조정, (ii)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50% 감액 사유 합리화, (iii) 직매입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위반금액’ 정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10. 14. 부터 2021. 11. 3. 까지 행정예고하였고,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요 개정 내용]

• 정액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 구간 조정

- **(개정 배경)** 과징금 고시상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의 구간별 상한이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의 과징금 고시 보다 낮아 공정위 소관 법령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 제기됨
- **(개정 내용)**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의 부과기준금액 구간별 상한과 동일하게 부과기준금액의 구간을 상향조정*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금액은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는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5백만 원 이상 2억원 미만

•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50% 감액 사유 합리화

- **(개정 배경)** 법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이상인 경우 예외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하여 감액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과징금을 감액하게 되는 한계 존재
- **(개정 내용)** 자본잠식율이 50%이상인 경우에도 과징금액의 50%를 초과 감액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

• 직매입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위반금액’ 정의 정비

- **(개정 배경)**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 기한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신설할 필요성 제기됨
*직매입거래 시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2021. 10. 21.시행)
- **(개정 내용)**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고려되는 ‘위반금액’의 정의에 직매입의 상품대금도 포함하도록 내용 추가

• 부칙

- **(시행일)** 2022. 1. 1. 부터 시행 예정
- **(적용례)** 위반행위 종료시점을 불문하고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하여 모두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할 예정

4.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10. 15.)

-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1. 5. 25. 시행)의 개정으로 위약금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i)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약정기간 경과 시,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하고, (ii) 결혼 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위약금률을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

[주요 개정 내용]

• 이용자의 해지권 보장 (제6조 개정)

- **(개정 배경)** 기존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서비스 제공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자격 보유기간 연장과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해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
- **(개정 내용)**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보유기간 연장 및 나머지 횟수의 소개 이행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해지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를 보호

• 결혼 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률을 세분화하여 적용 (제11조 개정)

- **(개정 배경)**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지난 2021. 5. 25. 부터 시행되어 위약금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의 위약금이 상이하게 되어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 제기됨
- **(개정 내용)** 계약 해지 시 가입비 환급과 관련하여, 기존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위약금률을 결혼을 위한 최종 만남을 전제로 한 서류 인증, 희망 조건 분석, 매칭 대상 검색 및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결혼 중개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세분화함

5.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 19.)

- (i)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및 주체 정비, (ii)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절차 폐지, (iii)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요 개정 내용]

•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 (안 제70조, 제73조, 제74조 등 개정)

- (개정 배경) 소비자단체소송은 엄격한 소송요건과 절차로 인해 '08년도 제도 시행 이래 8건의 소 제기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며, 소송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 (개정 내용)
 - 설립목적,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원고 단체에 추가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소송지연과 단체소송 활성화 저해요소로 지적되어온 소송허가절차를 폐지

• 소비자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81조의2 신설)

-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소비자단체·사업자·사업자단체와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6.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 시행 (10. 21.)

- 납품업체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과 함께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이하 “지연이율 고시”)가 2021. 10. 21.부터 시행되고,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요 개정 내용]

• 대금 지급 기한 (법 제8조 제2항 신설)

-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은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 또한, 직매입 거래의 법정 대금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개정 지연이율 고시는 직매입거래에서의 지연이율을 기존 특약매입거래 등에서의 지연이율 15.5%로 정하였음

-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자연이율 고시는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 전에 상품을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법 제32조 및 제35조)

• 영업시간 구속금지 (법 제15조의2 개정)

-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수탁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면 해당 조항 위반이 됨
-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의2는 판매수탁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매위탁을 받은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되고, 이를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법 제32조 및 제35조)

7. 공정위-한국지배구조원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10. 22.)

- 공정위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대기업집단 정책 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 대안을 논의함
- 토론회의 첫 번째 세션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서는 대기업집단 동일인과 관련된 쟁점과 개선방안이 다루어졌으며, 두 번째 세션인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시장감시강화’에서는 시장감시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개선방안이 논의됨

II. 주요 소식

1.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예정 (10. 14.)

- 공정위는 소회의 대기 안건 누적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는 과징금 또는 고발이 없는 시정명령 사건에만 적용되는 약식절차*를 1억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으로 12. 30.자 개정 공정거래법과 함께 시행할 방침

*약식절차란 공정위위원과 심사관, 피심인이 모두 회의에 출석해 심리하는 정식절차와는 달리 심사관, 피심인의 회의 출석 없이 심결 보좌 공무원이 소회의 구성위원 3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후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의미. 약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피심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정식절차를 요구할 경우 정식절차에 따라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음

2. 공정위,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 구성 예정 (10. 17.)

- 공정위는 사건적체 지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구성, 내부시스템 점검을 시작할 예정. TF 성격으로 구성되는 업무개선 작업반은 업무처리 관행 및 직원교육 시스템 등에 대한 종합점검과 함께 상임위원 인원 확대 등 공정거래 사건의 신속하고 내실있는 조사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것으로 알려짐
- 공정위 관계자는 “작업반은 권한이관 등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철저히 공정위 내부의 시스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

3. 기업집단국 지난 4년간 총 28건 제재 (10. 18.)

-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지난 4년 동안 대기업들을 상대로 총 28건을 제재하였고, 이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총 17건
- 또한 공정위가 ‘빅테크 규제’를 강조하고 있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업집단국의 감시도 확대될 전망

4.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필요성 재강조 (10. 20.)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21. 10. 20.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의 거래상 중요도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규제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온라인플랫폼 입점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규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공정위가 주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

5. 지난 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내부거래 총액 8.7% (약 15조원) 감소 (10. 21.)

-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기업평가기관 통계에 의하면, 내부거래 관련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공정거래법(2021. 12. 30. 시행)의 적용을 앞두고 지난 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총액이 약 8.7% (약 15조원)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개정 공정거래법(2021. 12. 30. 시행)은 기존에 특수관계인(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는 20% 이상)를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i)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0% 이상인 상장·비상장 계열사 및 (ii)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대상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함

III. 국회 발의법안

1.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전재수 의원안) 국회제출 (10. 15.)

- 국회 정무위 소속 전재수 의원은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i) 분쟁조정협의회가 발주자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4조의5 제2항), (ii) 분쟁조정 과정에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4조의5 제3항, 제27조 제3항 제3호), (iii)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사건이더라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안 제24조의5 제4항 제3호) 등을 신설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2.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윤준병 의원안) 국회제출 (10. 21.)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하도급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대금을 다른 대금과 구분하여, 수급사업자의 임금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임금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안 제14조의2)

3.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안병길 의원안) 국회제출 (10. 21.)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유해화학물질인 시약판매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여 시약 판매의 안전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안 제20조의2)

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정부안) 국회제출 (10. 22.)

- 정부는 소비자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i)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및 주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안 제70조), (ii)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현행 법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iii)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의견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81조의2)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함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